#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575

발의연월일: 2023. 1. 19.

발 의 자:이용빈·강득구·김병욱

김병주 · 김성환 · 민병덕

민형배 • 박성준 • 백혜련

서영교 · 송갑석 · 신영대

양정숙 · 양향자 · 윤영덕

이병훈 • 이용선 • 이정문

이형석 · 조오섭 · 홍정민

의원(21인)

## 제안이유

대구·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고도·개발 제한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확대되고 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광주 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별도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인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도시와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한편 종전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 이전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등).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예비타당 성 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등).

##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구·광주 군 공항"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제11전투비 행단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 2.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란 대구·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과 이전에 따른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신공항 건설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항만시설 등의 건설
    - 나. 신공항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건설

- 다. 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이주단 지 등 신도시 조성과 이에 수반된 지역주민편익시설, 관광시설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 라. 소음완충지역을 활용하는 사업
- 마.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재산의 가액에 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시행 하는 지원사업
- 4. "종전부지"란 대구·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 5. "이전부지"란 대구·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신공항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 6. "이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이전부지가 위치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중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 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7.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대구·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가 주도의 대구 ·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 2. 대구광역시·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의 확충
  - 3.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건설
  -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 5.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국제적 관광·상업·첨단산업 도시 조성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 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이 완료된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 제7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구·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한 다.

-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전후보지
- 2. 지원사업 및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 제10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 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제3장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제11조(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 ①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전지역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

- 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 2. 제17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 3. 제18조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 4. 이전사업 관련 중요 사항
- 5. 이전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이전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 견 조정에 관한 사항
- 7.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중요 사항
- 8. 그 밖에 이 법에서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대 구·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방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2.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 4.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한다.
- ⑦ 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 ⑧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실무위원회(이하 "추진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⑨ 그 밖에 추진위원회 및 추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이전사업 방식 및 시행

제12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제55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서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세출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및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 1. 이전사업 추진계획
-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13조(이전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 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②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이전지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의 시설 규모를 고려한 이전시설의 소요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다.
  - 1. 신공항 건설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
  -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15조(이전시설 국가 지원)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 관련 시설 이전, 토양오염처리비, 이전지역 진입도로·철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6조(이전사업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지원사업

- 제17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이전주변지역에 대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원계획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소리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아

닌 공사로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따라 필요하게 되거나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라 한다)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부대공사의 범위 등 부대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22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시개발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 제23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22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광역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수용계획
- 2. 토지이용계획
-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 4. 교통처리계획
- 5. 도시문화계획
- 6. 경관계획
- 7. 환경보전계획
-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10.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12. 재원조달계획
- 13. 종전부지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제25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 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 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 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

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법 제28조에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법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협의 또는 승인, 같은법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및 같은법제49조에따른매입목적변경의승인
-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 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 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 에 관한 협의
-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 획의 승인
-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 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승인 또는 협의

-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 에 관한 협의
-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3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27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통신·가스,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 조를 준용한다.
  - ②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변지역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 제29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정부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 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산지관리법」,「하천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환경보전법」,「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환경개선비용 부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 제32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33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4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

- 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5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있다.
- ⑤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3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지원사업 및 종전부 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